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제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 마.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사.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아.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자.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 차.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2.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이하 “허가신청지”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이하 “기존허가지”라 한다)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2호에서 기존허가지의 면적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인하여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되어 있는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 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다.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이하 “주간선도로”라 한다) 또는 보조간선도로
 - 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한 면도
 - 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상의 도로

※ 비고

산림청장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